#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67

발의연월일: 2020. 9. 14.

발 의 자:김성환·김정호·전재수

어기구・신정훈・이소영

유재갑 • 이워택 • 유준병

이용호 · 안규백 · 이인영

허 영・양정숙・김남국

이은주 • 이용우 • 박 정

박성준 • 아수진비 • 양명영

강득구 · 박영순 · 황운하

김홍걸 • 박홍근 • 김영배

윤건영 • 박완주 • 김승원

문정복 · 정춘숙 · 남인순

최기상 의원(34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

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,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### 주요내용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11호 신설, 제72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제72조의2에 따른 가중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제72조의2제2항 단서 중 "전선로"를 "국가와 전선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	제49조(기금의 사용)
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	
다.	<b>.</b>
1. ~ 10의2. (생 략)	1. ~ 10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1. 제72조의2에 따른 가중전선
	로의 지중이설 사업
<u>11.</u> (생 략)	<u>12.</u> (현행 제11호와 같음)
제72조의2(가공전선로의 지중이	제72조의2(가공전선로의 지중이
설) ① (생 략)	설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	②
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	
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시장・군	
수・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	
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	
경우 <u>전선로</u> 를 설치한 자는 산	<u>국가와 전선로</u>
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	
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	
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